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1월 일
제 출 자 : 곽길영의원외 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「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(안)제4조(월정수당지급)제1항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154만원을 월156만 6천원으로 정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
나. 예산조치 : 예산반영
다. 기 타
-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
-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〔2014. 11. 11~ 11. 20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**“154만원”을 “156만 6천원”**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54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 ----------156만 6천원-----. ----------.
②(생 략)	②(현행과 같음)